프랑스 농식품 수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FPI 한식진흥원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목차

1. 수입 전 사전준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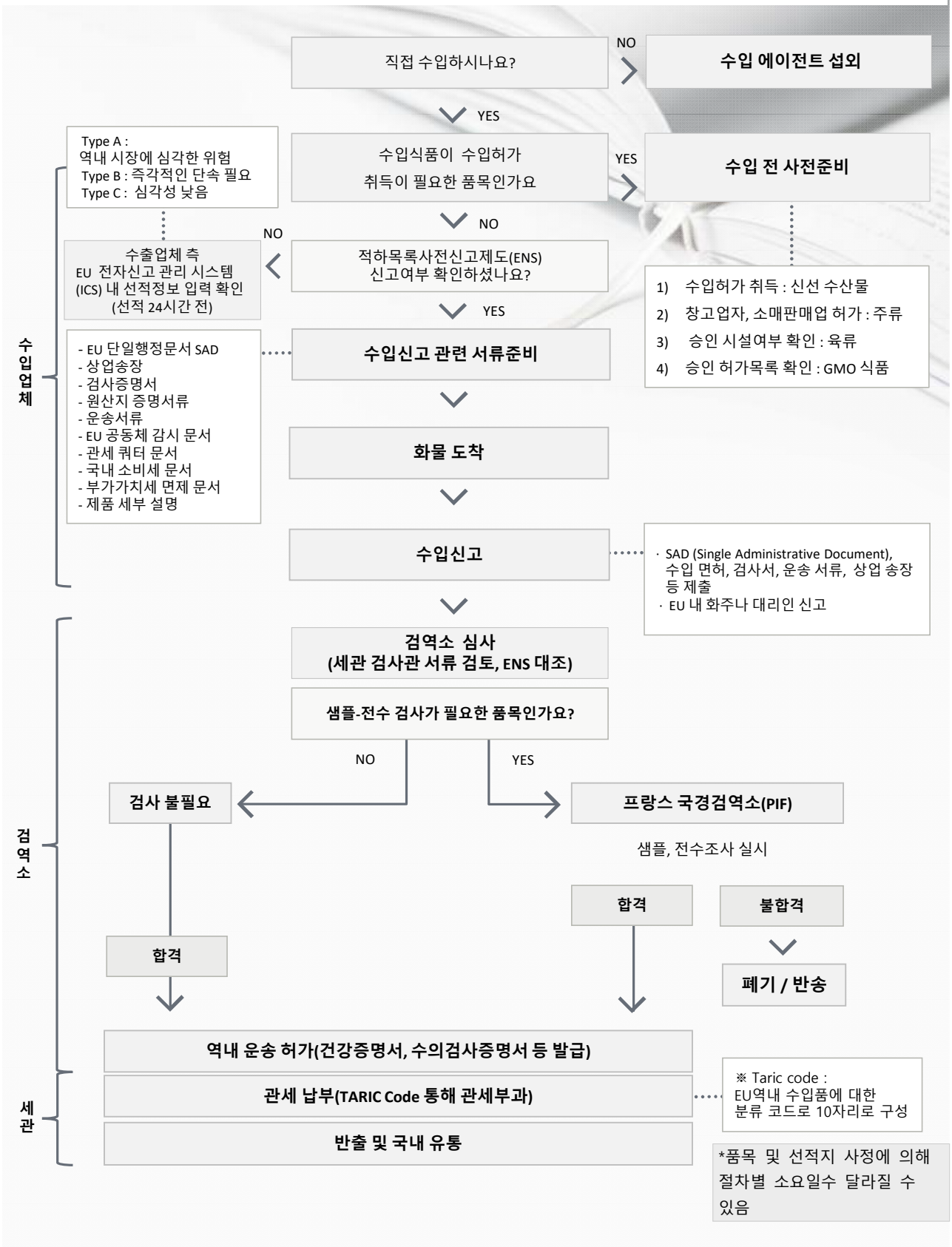
2. 수입신고 관련 서류 준비 11

3. 수입신고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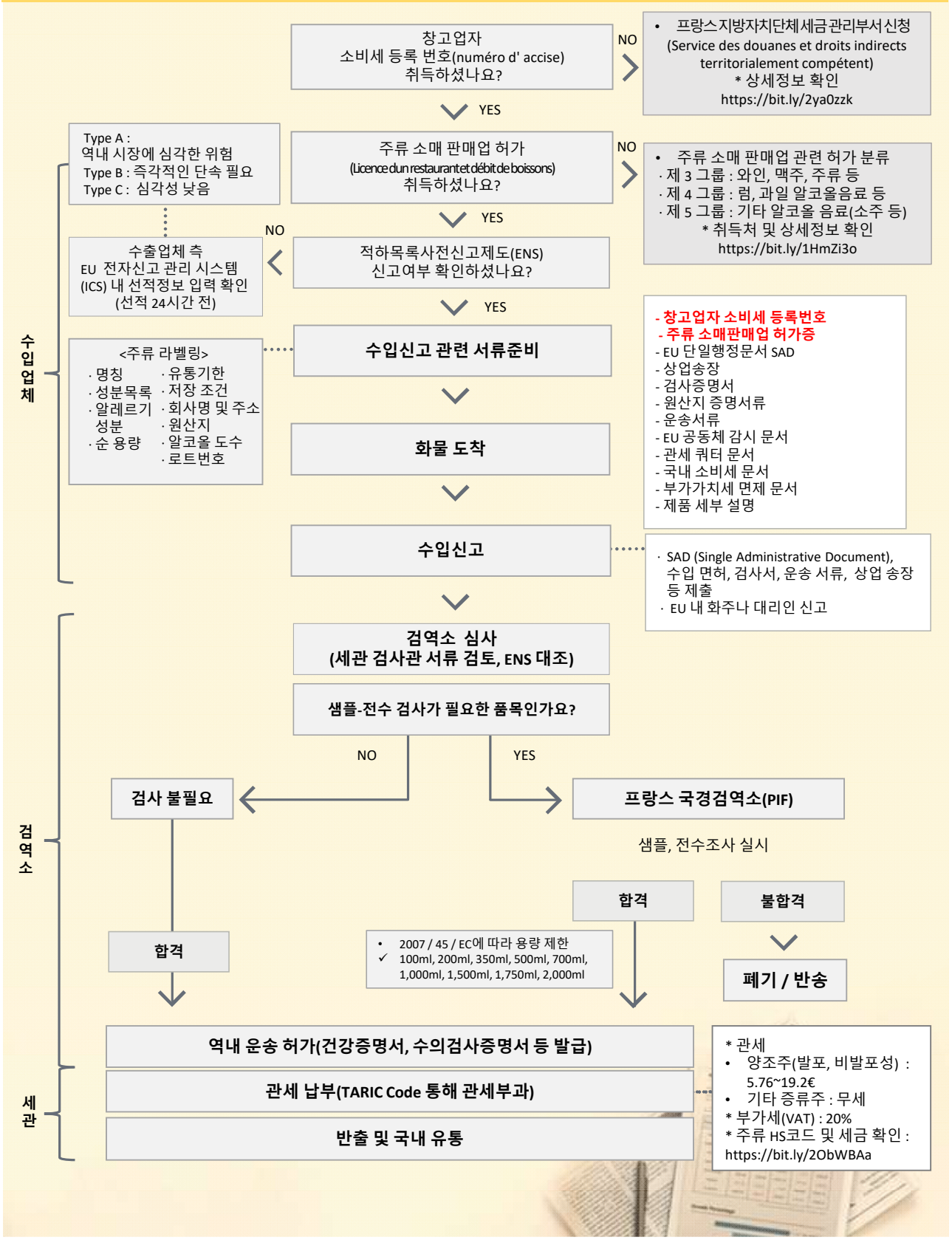
4. 통관 및 검역 14

5. 반출 및 운송 20

프랑스 농식품 수입 프로세스



프랑스 주(酒)류 수입 프로세스



프랑스 조미료/장류 수입 프로세스

수입업체

Type A :
역내 시장에 심각한 위험
Type B : 즉각적인 단속 필요
Type C : 심각성 낮음

GMO 농산물을 사용하였나요?

YES

- GMO 식 품 1829/2003 규정 :
- GMO로 이루어지거나 GMO를 포함하는 식품 및 사료의 시장 출시 및 판매 유통 행위를 규제
- GMO 함유량이 원재료의 0.9%를 초과한 경우 GMO 라벨을 부착

NO

적하목록사전신고제도(ENS) 신고여부 확인하셨나요?

NO

수출업체 측
EU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 내 선적정보 입력 확인 (선적 24시간 전)

YES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 EU 단일행정문서 SAD
- 상업송장
- 검사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류
- 운송서류
- EU 공동체 감시 문서
- 관세 쿼터 문서
- 국내 소비세 문서
- 부가가치세 면제 문서
- 제품 세부 설명

화물 도착

수입신고

-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수입면허, 검사서, 운송서류, 상업송장 등 제출
- EU 내 화주나 대리인 신고

검역소

검역소 심사
(세관 검사관 서류 검토, ENS 대조)

샘플-전수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가요?

NO

검사 불필요

합격

YES

프랑스 국경검역소(PIF)

샘플, 전수조사 실시

합격

불합격

폐기 / 반송

– 농약 기준치(MRL) 확인
: https://bit.ly/2yonFRT
- 첨가물 calcium benzoate, calcium hydrogen sulphite 함량 주의
- 유해물질 Buprofezin 0.05 mg/kg 이내, Cyazofamid 0.02mg/kg 이내 준수

세관

역내 운송 허가(건강증명서, 수의검사증명서 등 발급)

관세 납부(TARIC Code 통해 관세부과)

반출 및 국내 유통

* EU FTA 관세율
- 고춧가루 : 0%
- 장류 (각종 소스류) : 0%) : 0



1. 수입 전 사전준비

□ 수입면허

가. 해산물 관련 제품

○ 유럽으로 주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한국산 식품 품목은 해산물로,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에서의 해산물 및 관련 제품(조갯살 등) 수입은 오래전부터 허가된 국가와 허가된 수출입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해산물은 냉동, 가공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가됨

○ 수산물(fishery) 수입허가국과 수입허가업체 리스트는 다음 EU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음
: 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 해산물의 경우 수출입 허가를 사전에 받은 업체만 수출입을 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산물을 EU에 수입하려면 1664/2006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와 신 위생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함
- 신 위생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설령 허가받은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주의가 요망됨

○ 수출국 관할 당국의 검사를 받아 EU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승인을 받은 어선과 업체(예를 들어 가공처리공장, 냉동 또는 공장 어선, 냉장창고 등)만 EU에 수출할 있음. EU 집행위는 수출승인 업체 리스트를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 관련 인터넷 사이트 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third_en.htm
- EU 집행위는 EU의 요구조건이 이들 어선과 업체에서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ood and Veterinary Office'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시찰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주류

○ 프랑스에서 알코올을 수입 · 판매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규정 항목의 표시 EU 지침에 따른 용량 기준 등을 충족해야함

○ 수입허가
- 프랑스 주류 수입 시 수입 라이센스는 필요 없지만, 창고업자(entrepositaire agréé de boissons)로 소비세 등록 번호(numéro d' accise)의 취득이 필요함
- 그러나 소량이면 보관세 · 소비세 등을 전액 지불 조건 하에 비세 등록 번호의 취득

없이 수입이 가능함

- 소비세 번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증류주 10리터, 양조주 20리터, 와인 90리터, 발포 포도주 60리터, 맥주 110리터임(수입 일반 법전 부속서 3,110-0A 조)

○ 소매 판매업 허가

- 프랑스에서 알코올음료를 수입 판매하려면 공인 창고업 또는 음료 소매업(débitant de boissons) 허가가 필요(수입 일반 법전 302G 조)
- 음료 소매업 소매 형태 분류는 다음의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처음에는 제 1~5그룹까지 5개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4월 현재는 제 2그룹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제 1 그룹 : 무알코올 음료(탄산 물, 주스, 커피, 차 등)
  - 제 3 그룹 : 와인, 맥주, 주류 등
  - 제 4 그룹 : 럼, 과일을 증류한 알코올 음료 등
  - 제 5 그룹 : 기타 알코올 음료(술 · 소주 포함)

○ 라벨

- 모두 프랑스어로 소비자가 읽기 쉬운 크기로 표시해야 함
  - 품명
  - 성분 목록
  - 알코올 강도 1.2 %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 의무 없음
  - 알레르기 성분
  - 알코올음료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산화황(SO2)의 농도가 1킬로리터 또는 1리터당 10mg 이상의 이산화황을 함유하는 경우, “이산화황을 포함(contient des sulfites 또는 contient de l’anhydride sulfureux 영어 표기의 contains sulfites dioxide도 허용)” 로 표시해야 함
  - 증류에 사용되는 밀·보리 등의 곡물, 유청, 견과류는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순 용량
  - 유통 기한(알코올 강도 10 %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불필요)
  - 저장 방법(설명 없이는 제품을 제대로 사용 · 보존할 수없는 경우에만 표시)
  - 공급자(보틀링 업체 또는 EU 역내에 거주하는 판매회사)
  - 원산지
  - 알코올 도수
  - 로트 번호(L 계속 번호 표시)
  - EU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영양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알코올음료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칼로리는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그러나 칼로리를 표시하는 경우 100ml 단위의 에너지 가치를 kJ(킬로 줄)과 kcal(킬로 칼로리)로 모두 기재하여야함)

○ 용량

- 와인의 용량 규정은 100ml, 187ml, 250ml, 375ml, 500ml, 750ml, 1,000ml, 1,500ml의 8가지이며, 증류주의 용량 규정은 100ml, 200ml, 350ml, 500ml, 700ml, 1,000ml, 1,500ml, 1,750ml, 2,000ml 9종류임

다. 육류

○ 육류, 육류 제품, 유제품 및 애완동물 식품은 EU가 승인한 시설에서 공급되어야함. 따라서 수입업자는 EU 승인 제조업체,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수입 전 확인이 필요함

- 유럽 승인 한국 내 육류, 육류 제품, 유제품 및 애완동물 식품 제조시설 리스트 확인은 하기에서 가능
  : 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 국내 검역시행장 확인 및 관련 문의처는 하기와 같음

□ 한국 검역 문의 연락처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

○ 위치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 Tel : 054) 912-0425
○ WEB : www.qia.go.kr/livestock/qua/listSxzkWebAction.do?clear=1

○ 또한 상기의 제품에는 적절한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GMO 관련 식품

○ EU 회원국은 EU의 법령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받은 GMO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GMO 첨가 식품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유럽식품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안정성을 인정한 GMO는 옥수수, 면화, 콩, 유채 등 58개 품목으로 이 제품들은 유럽 내에서 수입 유통이 가능함
  · 승인허가 목록: ec.europa.eu/food/dyna/gm_register/index_en.cfm
-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 중 GMO 함유량이 원재료의 0.9%를 초과한 경우 의무적으로 GMO가 첨가됐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품 혹은 유제품 및 가공식품 상의 GMO 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 한국과 EU의 GMO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한 바, 수출입 희망 업체는 EU의 법규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국은 식품에 포함된 GMO가 3% 이상이고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라벨을 적용하기에, 관련제품 수출 시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

- 건강식품시장의 성장으로 시판제품에 ‘GMO-free(GMO 미첨가)’ 라벨 부착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EU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차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GMO-free 라벨▐



*자료원 : www.semiorto.net, it.depositphotos.com, www.risograzia.it

2. 수입신고 관련 서류준비

○ 유럽연합에 수입된 모든 제품은 세관기관에 EU의 단일행정문서인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를 통해 신고되어야 함

○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는 유럽연합 전체국가에 통용되는 동일한 수입신고 서류로 이는 유럽 공동체법 2913/92조에 규정됨

○ 신고서는 유럽연합 해당 세관기관이 승인하는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함

○ 신고서에는 거래 시 사용하는 세율 체제를 표기해야 하며 세율의 종류, 제품의 가치 및 원산지 등도 표기

○ 신고서와 함께, 상업송장(인보이스),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운송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수출자와 협의 하에 준비 서류에 빠짐이 없도록 주의

- 유럽의 경우 ‘서류 미비’의 경우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함

<서류 목록>

- EU 단일행정문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상업송장
* 상업송장 필수 기재사항 :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번호, 결제 날짜, 결제 지연 시 이자율 및 복구 보상금(최저 40유로로 미리 지불시 금액 할인)
* 상업송장 선택 기재사항 : 세관 코드 및 각 항목의 원산지 및 배송지, 제품이 소포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고 2,300유로 미만일 경우 단일 행정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포는 CN23 신고서, 우편물은 CN22 신고서가 필요(보낸 사람이 작성)
- 검사증명서(보건, 수의학, 식물 보건 증명)
- 관세특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산지 증명서류
- 운송서류
- EU 공동체 감시 문서
- 관세 쿼터 요구를 뒷받침하는 문서
- 국내 소비세 목적에 필요한 서류
- 부가가치세 면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
- 제품의 특별한 성질을 확인하는 인증서

(식 품) 사용원재료, 성분조성 관련서류, 제조 또는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첨가물, 제조방법, 사용 등에 관한 서류,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발행 분석 증명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첨가물) 물질명,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첨가물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조사기관 분석증명서,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위생관리기준 관련 서류

(기구, 용기, 포장) 재질 등에 관한 서류, 용도, 해당 물품 그림, 원재료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분석증명서, 해당 제품이 사전확인제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수출국 공적조사기관 분석증명서

3. 수입신고

□ 적하목록사전신고제도(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 EU의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ICS)

- ICS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로 EU 역내 국가는 전면적으로 ICS 절차를 따르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 규정 CE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try Summary Declaration, ENS)의 도입이 핵심
-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

○ 적하목록사전신고제도(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 해운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 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
- 세관 당국은 ENS 접수 후 즉시 ENS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수입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물품 고유 번호인 MRN(Movement Reference Number)을 전달

<사전 적하정보 제출 시기>

구분	세관 통보시한
컨테이너 해상화물(단거리 제외)	출발지에서 선적 전 24시간 전
벌크화물(단거리 제외)	EU영역 최초 항구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영역 최초 항구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비행(4시간 이내)	비행기 실제 이륙시간까지
장거리 비행(4시간 초과)	비행기가 EU영역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1시간 전

출처 :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www.tradenavi.or.kr)

- 물품명세 기재 시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
  - 농산품(잘못된 예) → 오렌지, 생선, 쌀, 곡물(올바른 예)
- 제출된 ENS를 바탕으로 EU의 수입물품 위험도 분류 체계(Risk Type)에 따라 선적 물품의 위험도를 분류한 다음, 하역 승인의 여부를 결정
  - Type A는 역내 시장에 심각한 위험성을 끼칠 여지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DNL(Do Not Load) 메시지를 항공사 혹은 해운사로 통지하여 선적을 금지함. 단, DNL 통지가 물품 출항 이후 전송된 경우에는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

· Type B로 분류되는 경우는 즉각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하역 후에 검사를 실시
· Type C는 물품의 심각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원래 예정된 EU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가 실시

- 세관 당국으로 전달된 ENS를 바탕으로 세관은 해운사 혹은 항공사를 통해 수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물품의 사전 심사 여부와 물품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를 전달
-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 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

□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세관에 수입신고 시에는 EU의 단일 행정 문서인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를 사용
- 일반적으로 EU 내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화주나 대리인이 신고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 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을 의뢰
-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해야하며, 물품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 상업용 또는 공식 문서의 내용과 물품의 수입업자 또는 운송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
- SAD와 함께 수입자의 수입 면허, 검사 인증서, 운송 서류, 상업 송장 등을 제출해야 함

4. 통관 및 검역

□ 물품 반입

○ 도착한 화물은 보세구역으로 옮겨져 보관됨. 보세구역은 세관이 지정한 세관 사무소 및 기타 장소, 자유지역(Free Zone) 등이 있음
- 수입물품 도착 보고는 수입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 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해야 함
- 물품의 하역 및 환적은 세관의 허가를 받은 뒤 가능하며, 세관은 물품검사, 샘플 채취, 운송수단 검사 등의 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개봉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 등임

○ 이 밖에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며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 통관수속

○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EU에 속해있어 EU의 28개 회원국은 관세의 목적상 단일 영역임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 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 신고서 작성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 입항 → 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 EORI 번호(EU 인증 수출자번호)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는 수출입업자의 세관 등록 번호를 의미함
- EORI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임
- 관세 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취득 할 수 있음
- EU 이외의 지역의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받게 됨

□ 검역

○ EU 역내에 신선 육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유럽 이사회 지침 96 / 23 / EC에 따라 EU 규정에 따른 위생 및 HACCP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취지의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 가공, 검역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산 동물, 육류, 육류 관련 제품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

○ 식물의 경우 살아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실시를 원칙으로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제출해야 수입 가능

○ 대부분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식물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프랑스에서의 검역을 면제하고 있음

○ 진백, 장수매, 수사해당, 모과, 오엽송, 해송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검사는 프랑스 내 국검 검역소에서 권한 기관과 수의사가 진행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증명서 검사(원산국 권한 기관이 발행한 보건 증명서) 또는 수의학 문서
- 제품의 정체성 검사를 통해 증명서에 기술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포장, 온도, 샘플 채취, 연구실 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제품이 유럽연합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tariff number)

○ 잔류 농약 규제
- EU에서 각 식품에 대한 잔류 농약 제한량을 나타내는 잔류 농약 기준(Maximum Residue Limit , MRL)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396/2005 로 규정
- 잔류 농약 기준은 해당 식품 1 킬로그램 당 허용되는 농약의 양(mg / kg)으로 표시되며, 잔류 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mg / kg이 적용
- 모든 식품에 대한 잔류 농약 기준은 “EU 농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가능하게 되어 있음
  : 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public/?event=homepage&language=EN

○ 중금속 및 오염 물질 (최대 잔류 기준치 / 금지)
- EU에서는 유럽위원회 규정 (EC) 1881/2006에 오염 물질의 상한치를 규정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7690466535&uri=CELEX:32006R1881

○ 식품첨가물 기준
-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형태, 향취, 염기성이나 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및 보관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 독성 미세균류, 중금속, 식물방부제, 동물약품 등의 오염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보지 않음
- ‘Regulation(EC) No 1333/200850.’의 Annex Ⅱ 에서는 EU지역 내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어 식품첨가물별 해당 성분 및 최대 허용 기준치를 검색할 수 있음
  : webgate.ec.europa.eu/foods_system/main/?event=substances.search&substances.pagination=1

○ 식품 포장 규정(식품 용기의 품질 또는 기준)
- 식품용 용기・포장에 관해서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규정 (EC) No 1935/2004, (EC) No 2023/2006에 정해져 있음
- 특히 플라스틱 소재는 포지티브리스트(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 형식으로 사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위원회 규칙 (EU) No 10/2011 ANNEX I 목록에 게재되는 물질 만이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음

・유럽위원회 규정 (EC) No 1895/2005하여 비스페놀 F 디 글리시 딜 에테르(BFDGE), 노볼락 그룹 딜 에테르(NOGE)는 식품 관련 소재(흡습제 등을 포함한다)에 사용 금지
・비스페놀 A 디 글리시 딜 에테르(BADGE) 및 그 파생물은 식품 관련 소재(흡습제 등을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의 상한이 정해져 있음

- 또한 EU 수준에서의 규제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은 독자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
・프랑스에서는 법령 No 2012-1442에 따라 식품에 접촉하는 모든 포장 용기 등에 대한 비스페놀 A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라벨링

○ 프랑스어로 제작된 라벨 필수
- 프랑스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Regulation(EU) No.1169/2011과 프랑스 소비자법 R 112-1 이하의 조항으로 구성됨
- 식품 라벨링은 식품을 상업화하는 업체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EU 내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수입업체에게 있음
- 본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라벨 표시사항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기록되어야만 함. 단, 제품 이름의 경우 국가에서 판매 시 사용되는 제품명의 허용됨

○ 강화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지침
- 새로 시행될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존의 라벨링 규정인 'Regulation No 2000/13/EC'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범위를 가공식품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요리까지 확대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해서는 'Regulation No 1169/2011'의 부록2에 기재되어 있음

○ 유럽 식품표시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 가능(www.foodlabelling.info)

▌프랑스 식품 라벨 표시사항 ▌





- 식품명
- 영양성분
- 구성성분
- 제조회사
- 제조공장
- 유통기한
- 보관방법 및 섭취방법
- 순중량

항목	설명
표기 언어	반드시 프랑스어로 명기할 것 (제품의 경우, 국가에서 사용되는 제품명 가능)
제품명	법적인 제품의 공통 명칭을 기입해야 함
영양성분	필수표기항목(에너지 양, 지방, 탄수화물, 설탕, 지방, 소금)
구성성분	포함된 성분을 전부 명기할 것, 성분 함유량에 따라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표기해야 함
제조회사	제조회사 또는 EU 내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제조공장	생산 공장과 로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함
원산지	식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성분의 원산지도 명기해야 함
유통기한	‘Best Before’ 에 의거해 일/월/연도의 순으로 표기해야 함
보관방법	포장을 개봉한 이후 특별한 보관방법이 필요한 식품에만 해당
섭취법	별도의 섭취법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섭취가 어려운 식품에만 해당
기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경우 이탤릭체나 색 글씨 변경을 권장

□ 검역 문의 연락처

▌The General Direction for Food of the French Ministry of Agriculture (DGAL/MINAG) ▐

○ 위치 : Direction Générale de l’ Alimentation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251 rue de Vaugirard 75015 Paris
○ Tel: (+33) 1 49 55 49 55
○ WEB : www.agriculture.gouv.fr

▌ Service d’ inspection vétérinaire et phytosanitaire aux frontières (SIVEP) ▐

○ 위치 : Direction Générale de l’ Alimentation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251 rue de Vaugirard 75015 Paris
○ Tel: (+33) 1 49 55 49 55
○ WEB : www.agriculture.gouv.fr

□ 관세 및 기타 세금

○ 유럽연합 관세 코드인 Taric code를 사용하여 관세를 부과
- Taric code는 역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한 분류 코드로 10자리로 구성
- 부가가치세 및 특별세를 제외, FTA 협정관세 등을 통합한 관세를 부과하며 Taric code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
- 동 코드는 EU 관세총국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
  · www.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한-EU FTA에 따라 관세는 FTA 협정에 규정된 협정 관세를 우선적으로 따름
-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한 후 이탈리아 세관당국의 요구 시 제출해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을 먼저 해야 함
- 관세는 EU 공통 관세를 적용하지만 부가가치세(VAT)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
  ·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22%, 일반식품 10%, 주류 및 음료 22%, 생필품·쌀·파스타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등)에 대해서 특별세(excise)가 부과되면 주류는 과세비율이 30%가 넘게 됨. 특별세의 세율은 EU 회원국 마다 차이가 있음

○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필요
-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 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수출자가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일반 통관절차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면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음
-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다만,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세관별 연락처는 하기에서 검색 가능함
: pro.douane.gouv.fr/rush/API_Service.asp?sid=&app=

5. 반출 및 운송

○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 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 하지 못한 경우(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 컨테이너 비용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컨테이너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같음(서류 기준 통관)
  · 르아브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컨테이너 CBM당 핸들링 비용이 5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Security Cahrge(ISPS) 비용이 약 18유로(선사별로 상이함)이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300~350유로임.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르아브르)는 약 200~300유로가 소요됨
  ·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르아브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물류사별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1,700~2,000유로 가량의 비용이 소요

○ 한국-프랑스 운송 소요기간
- 한국-프랑스 구간 해상 운송 소요시간은 항해 루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한국-르아브르 직행 루트 27~30일, 한국-마르세이유 직행 루트 26~29일이 소요됨. 한국-마르세이유 운송 루트는 부산 - 싱가포르(Loading, Unloadig) - 이집트 (수웨즈 운하) - 지중해(마르세이유)이며, 한국-르아브르 운송 루트는 부산 - 싱가포르(Loading, Unloadig) - 이집트(수에즈 운하) - 지중해 - 지브랄타(스페인, 모르코 해역) - 북구(르아브르)임

프랑스 농식품 수입 가이드북

발 행 일 2018년 10월

발 행 처 한식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홈페이지 www.hansik.or.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식진흥원에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